

#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

의안 번호	5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6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정부조직법」 개정(2013.3.23., 2014.11.19.)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수도권교통조합 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제6조 제2항, 제6조 제3항 4호, 5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개정  
나.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부칙 신설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, 제164조

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64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향후계획 : 시의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승인요청

마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(별첨)

##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

「수도권교통조합 규약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3항제4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, 인천광역시의회,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조합회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서울특별시 5인, 인천광역시 3인, 경기도 5인, <u>국토해양부</u> 2인으로 구성한다.&lt;개정 2009.10.22&gt;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국토해양부</u>의 광역교통 담당 국장 1인</p> <p>5. <u>국토해양부장관</u>이 추천하는 교통 관련 전문가 1인</p>	<p>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<u>국토교통부</u>----- -----</p> <p>③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국토교통부</u> -----</p> <p>5.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----- -----</p>